

#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한 입법적 검토

-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김 성 화\*

<차례>

- I. 머리말  
II. 독일 보험계약법상 사기적 보험금 청구의 규제  
III. 일본 보험법상 사기적 보험금 청구의 규제  
IV. 맺음말 -우리 법에의 시사점

주제어 : 보험사기, 사기적 보험금청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부실신고, 실효의 법리

<국문초록> 최근 보험사기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계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공법적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상 보험사기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07년 전면 개정된 독일의 보험계약법과 이를 참고하여 2008년에 제정된 일본의 보험법을 비교검토하여 보험계약법상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공법적인 측면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아울러 사법적인 측면의 보험사기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순차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상법개정안 제657조의2에서 보험금청구권자의 사기청구에 대한 '실권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독일의 판례 법리로서 실효의 법리가 상당히 축척되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급부면책이라는 강한 제재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신의칙 위반이 인정되는 사기청구에 대하여는 제재적 효과가 과도하지 않도록 이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기청구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사고로 인한 손해를 사기의 목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보험제도에 미치는 폐해는 고의의 사고 못지않게 크기 때문에 사기청구에 의한 실권조항의 효력을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상법개정안은 사기의 목적으로 보험금의 지급 여부 또는 그 보험금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보험자의 급부면책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독일 보험계약법에서는 책무위반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보험자의 급부의무범위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급부면책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인과관계의 부존재특칙을 중과실뿐만 아니라, 고의의 위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 논문접수일(2017.06.10), 심사개시일(2017.06.19), 게재확정일(2017.06.23)

반의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특칙에 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보험계약자가 중과실에 의한 위반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책임을 일부 감축할 수 있다는 일부면책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I. 머리말

2000년대 이후 급증하는 보험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계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과 관련하여 보험사기행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보험사기죄 등을 신설하였다. 하지만 이 법이 공법적 측면에서 특별법 형태로 규정된 것을 차치하더라도 보험사기의 방지를 위한 기망적 보험계약과 허위의 보험금청구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sup>1)</sup> 종래 보험사기죄에 관하여 형법학계에서는 형법이나 보험법에 보험범죄에 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하였고, 보험학계에서는 이른바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보험사기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sup>2)</sup>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관한 그동안의 논란이 일단락되었지만, 이 법이 공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그 제도적 취지 및 내용의 적합성과 별개로 사법적인 측면에서 보험계약상 사기적 보험금청구 등에 관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13년 법무부는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한 상법개정안 제657조의2(사기에 의한 보험금청구)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19대 국회에서 이 개정안은 폐기되었고, 상법특별위원회 보험법분과에서 이를 보완하여 제출한 상법개정안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보험사기의 심각성 및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더불어 상법상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기 위하여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비교검토했던 후 그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김슬기, “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연세법학』 제27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2016), 80면.

2) 성수훈, “우리나라 보험사기의 실태와 효과적인 대처방안”, 『보험법연구』 제5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2011), 96면.

## II. 독일 보험계약법상 사기적 보험금청구의 규제

### 1. 서언

#### (1) 보험계약법의 발전

1908년 독일에서는 상법에서 보험계약법(Versicherungsvertragsgesetz: VVG)을 분리하여 이를 독립적으로 제정하였다. 그 후 국내외 보험시장의 변혁과 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2007년 보험계약법 개정에서는 종래의 문서형식이 아닌 텍스트형식으로 변경하였고, 종래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던 방식에서 포괄적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그 개념을 명확하게 규율하였다. 또한 보험자의 설명의무 및 정보제공의무의 변화, 증권모델의 청약모델로 변경,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도입, 보험료불기분 원칙의 포기, 개별보험종별로의 법정 최저보호수준의 설정 등이 신설되었다.<sup>3)</sup> 이러한 보험계약법의 개혁은 EU의 지침에 따라 국내법을 전환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특히 소비자보호에 관한 EU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sup>4)</sup> 또한 독일에서는 보험계약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던 약관규제법이 채권법에 포함되면서 폐지됨에 따라 통일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었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유럽의 역내 금융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07년 7월 보험계약법이 개정되어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sup>5)</sup>

#### (2)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한 규율

개정보험계약법에서는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제7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이행되어져야 하는 계약상의 책무가 위반된 때에는 의무위반이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28조). 또한 독일 민법(BGB) 제314조에서는 중요한 사유에 의한 특별해약권을 인정하고 있고, 각종보험약관에서는 보

3) 이필규·최병규·김은경 역저,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VVG)」, 세창출판사, 2009, 107-111면 참조

4)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Entwurf eines Gesetzes zur Reform-VVG, 11. Oktober, 2006, Drucksache 16/3945, S. 118.

5) Lange, Das Anerkenntnisverbot vor und nach der VVG-Reform, VersR 2006, S. 1313.

험금의 사기청구에 의한 보험자의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다.<sup>6)</sup> 종래 독일에서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한 논의는 판례의 법리로서 중요한 사실에 의한 보험자의 특별해약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1908년 구보험계약법이 제정됨에 따라 부실신고 면책조항이 신설되었다.

## 2. 부실신고 면책조항

### (1) 책무위반의 효과

1908년 구보험계약법은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제33조), 보험계약자의 설명의무와 증거자료 제출의무(제34조)를 규정하였지만, 의무위반의 효과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는 책무(Obliegenheit)로서 인정되었다. 특히 책무위반의 효과로서 보험자의 이행면제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이행되어야 하는 계약상의 책무가 위반되어졌을 때에 보험자가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계약을 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구 보험계약법 제6조). 그 후 개정보험계약법은 이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면서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청구권이 보험계약자 이외의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해당 규정의 변경 등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되었다. 따라서 개정보험계약법은 제28조에서 책무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이행할 것과 보험사고 발생 후에 이행할 것으로 나누어서 규율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제19조에서 고지의무, 제23조에서 위험증가 방지 의무, 제26조에서 위험증가로 인한 면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지의무 등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는 책무위반에 관한 약정의 효과와 그 효과가 효력을 가진다는 조건을 규율하는 구조에는 변경이 없었지만, 해당 조건에 대하여는 상당히 큰 폭으로 변경되었다. 즉 개정보험계약법 제32조에 의하여 제31조 제1항 제2문은 “증거자료가 보험계약자에게 당연히 유리한 것이라면 보험자는 이 증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형식상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보험계약자에게 부과된 의무는 문서 또는 텍스트형식으로 합의할 수 있다.

6) Bruck/Möller/Brömmelmeyer, VVG, 9. Aufl. 2008, §31 Anm. 102.

## (2) 계약상 채무위반규정의 개정

개정보험계약법 제28조는 구보험계약법 제6조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제1항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이행되어져야 하는 계약상의 채무가 위반된 때에는 의무위반이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 보험자는 의무위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고발생 전후의 채무를 구분하여 급부면책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구별하지 않고 양자의 채무에 공통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둘째, 제2항에서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이행되어져야 하는 계약상의 채무가 위반되어졌을 때 보험자가 급부를 할 의무가 없다는 계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만 이행면제가 된다. 의무를 중과실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의무위반의 비율에 따라 보험자의 급부의무는 공제된다. 중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고발생 후의 채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반에도 급부 의무의 면책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하였지만, 중과실에 의한 위반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책임을 일부 감축할 수 있다는 일부면책원칙을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고지의무, 위험의 증가 및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 등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전부면책뿐만 아니라, 일부의 면책효과를 발생시키는 일부면책을 규율하고 있고, 약정에 의한 채무에 대한 중과실의 위반에 대해서도 일부면책을 적용하고 있다.

셋째, 제3항에서는 “의무의 위반이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확정 또는 보험자의 급부의무의 확정이나 범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제2항과 달리 급부의무를 진다.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악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1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래 채무의 위반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보험자의 급부의무범위의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급부면책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인과관계의 부존재특칙이 중과실에 의한 급부면책의 경우에만 인정되었지만, 개정보험계약법에서는 중과실의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의 위반의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악의로 위반한 경우에도 판례의 법리에 의하여 인과관계의 부존재특칙에 상응하는 급부면책의 효과발생을 제한적으로 해

석하였으며, 개정보험계약법에서는 이러한 판례의 법리(Relevanz Rechtsprechung)를 명문화하였다.<sup>7)</sup> 한편, 인과관계 부존재특칙은 사기에 의한 채무위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시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사기적인 위반의 경우에만 인과관계의 부존재특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급부면책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는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특칙이라고 설명한다.<sup>8)</sup>

넷째, 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보험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책은 보험사고의 발생 후 하게 되는 정보제공의무 또는 설명의무의 위반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를 이 의무위반에 대한 법률효과를 텍스트형식의 통지에 의하여 지시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급부면책의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자의 급부면책의 효과가 생길 수 있는 취지의 지시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는 채무위반에 따른 급부면책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자의 급부면책의 효과를 지시하여야 한다는 판례의 법리를 명문화한 것이다.<sup>9)</sup>

### (3) 사기청구에 관한 규제 확립

2007년 보험계약법 개정에 의하여 사고발생의 통지의무와 설명의무에 대한 위반의 효과는 강행법규적 성격을 가지는 보험계약법에서 급부면책을 인정하게 되었다. 종과실에 의한 위반의 경우에는 전부면책뿐만 아니라 일부면책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이는 채무위반이라는 독일법 특유의 법개념에 기초한 규율이라고 볼 수 있다. 급부면책이라는 강한 제재적 효과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이 일부 제기됨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약관조항의 부당조항규제가 판례에서 논의되면서 개정보험계약법에서는 다소 완화되었다. 1908년 구보험계약법에서는 보험금의 사기청구에 관한 독자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하지 않았지만, 판례에 의하여 사기청구도 고의의 채무위반에 해당되고, 여기에 계약상의 채무위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급부면책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사기청구만으로 급부면책이라는 효과가 인정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7)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a.a.O., S. 69.

8)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a.a.O., S. 69.

9)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a.a.O., S. 69.

### 3. 특별해약권과 실효의 법리

#### (1) 민법상 특별해약권의 규율

중요한 사유에 의한 특별해약권은 판례의 법리로서 발전된 것으로 1908년 구 보험계약법에서는 이를 명문으로 규율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2년 1월 독일에서는 ‘채권법현대화법’ (Schuldrechtsmodernisierungsgesetz)이 시행됨에 따라 민법 (BGB) 제314조에 계약 일반에 관한 특별해약권으로서 중요한 사유에 의한 계속적 채무관계의 해지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자의 중요한 사유에 의한 특별해약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채권법현대화법에 의하여 2002년 개정된 채권법이 가지고 있는 계약법적 특징과는 차이가 있는 보험계약법을 개정하여 기본법인 민법과의 관점에서 그 마찰을 제거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sup>10)</sup> 중요한 사유에 인한 보험자의 특별해약권은 계속적인 채권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에게 생긴 사유로 인하여 그 관계를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채권관계를 해소하는 법리를 의미한다. 즉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 해지를 인정하는 것이고 중요한 사유는 당사자 일방에게 책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sup>11)</sup> 예컨대, 일방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신뢰관계가 훼손된 경우에는 중요한 사유에 해당될 것이고<sup>12)</sup> 이는 보험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청구시 요건에 관한 부실기재, 증거위조, 기수령한 보상의 은닉 등 사기적 보험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유에 의한 특별해약권이 인정된다고 한다.<sup>13)</sup> 여기서 특별해약의 효력은 장래효만 인정된다.<sup>14)</sup>

#### (2) 보험약관상 실효의 법리

독일에서는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하여 1908년 구보험계약법 제6조 및 2007년 개정보험계약법 제28조의 채무위반의 효과에 대한 규정과 민법 제314조의 중

10)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a.a.O., S. 118.

11) Juris Praxis Kommentar BGB/Weth, 3. Aufl., Bd.2.1, 2006, §314 Anm. 12.

12) Juris Praxis Kommentar BGB/Weth, a.a.O., §314 Anm. 14.

13) Beckmann/Matusche-Beckmann, Versicherungsrechts-Handbuch/Johannsen, 2. Aufl. 2009, §8 Anm. 75.

14) Juris Praxis Kommentar BGB/Weth, a.a.O., §314 Anm. 39.

요한 사유에 의한 특별해약권의 규정을 비롯하여 각종보험약관에서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의하여 보험자는 면책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sup>15)</sup> 그 대표적인 보험약관으로는 ‘화재보험보통보험약관’(Allgemeine Feuerversicherungsbedingungen: AFB)이 있다. 이러한 사기청구조항은 보험사고 발생 후 사기의 미수도 포함되며, 보험자에게 손해보상 의무의 급부면책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개정보험계약법 제28조 제3항은 사기청구에 관하여 인과관계의 부존재특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보험약관상 사기청구조항을 유효하게 하는 의미도 있다. 독일에서는 판례의 법리로서 보험계약상의 약정이 없더라도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악의가 있는 행위, 특히 사기는 계약상의 책무를 침해하게 된다. 실효의 법리는 독립적이고 비종속적인 개정보험계약법 제28조와 병존한다. 특별한 예외사례에서 실효가 적절하게 한정된다면, 편면적 강행규정인 제28조 제2항이 회피되는 것은 아니다.<sup>16)</sup>

### (3) 특별해약권과 실효법리의 관계

중요한 사유에 의한 특별해약권의 효과는 장래효에 관한 것이다. 독일에서 보험자의 특별해약권 행사의 효과는 규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중요한 사유에 의하여 해제권이 행사된 경우 보험자의 급부면책의 효력은 규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사유에 의한 해제와 부실신고의 면책과의 관계가 상호 저촉되는 경우는 드물고,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의한 실효법리와 특별해약권은 상호 취지를 달리하는 제도이지만 공존하고 있다. 사기적 보험금청구는 특별해약권의 행사가 인정되는 중요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지만, 특별해약권의 행사에 의하여 장래에 향한 보험계약은 종료하는 동시에 급부면책은 책무위반의 효과 또는 사기청구에 의한 실효법리의 효과로서 인정되며, 양자는 상호 양립할 수 있게 된다.

15) Bruck/Möller/Brömmelmeyer, a.a.O., §31 Anm. 102.

16) Langheid/Wandt, Münchener Kommentar zum VVG, Bd.1, 2009, Vor §28 Anm. 26-27.

### Ⅲ. 일본 보험법상 사기적 보험금청구의 규제

#### 1. 서언

일본에서는 종래 상법의 보험계약법 부분을 분리하여 2008년 6월 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기적 보험금청구의 주체를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로 제한하고,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수익자에 의한 사기적 보험금청구가 발생한 때 해당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사망보험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제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였다.<sup>17)</sup> 다만 이미 발생한 손해나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사기적 보험금청구라도 하더라도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2007년 독일 개정보험계약법과는 다소 상이하다. 일본 보험법이 2008년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 중 하나는 중요한 사유로 인한 보험자의 해제의 규정에서는 보험급여의 청구에 대하여 사기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려는 것이 중요한 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고(제30조 제1항 제2호), 보험자에 의한 해제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 발생하게 되며(제31조 제1항), 중요한 사유발생시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해서는 보험자는 면책된다고 한다(제31조 제2항 제3호). 이 규정이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제33조 제1항) 부실신고 면책조항은 부실신고에 해당하는 사기청구라는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급부면책의 효과를 사기청구라는 중요한 사유발생시보다 이전의 보험사고발생시까지 소급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편면적 강행규정에 반하여 유효하지 않다는 해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18)</sup>

#### 2. 부실신고 면책조항과 중요한 사유에 의한 해제권

##### (1) 부실신고 면책조항

종래 부실신고 면책조항은 보험금의 부정청구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목적으로 하

17) 한창희, “사기적 보험금청구”, 『법조』 제623호(2008), 70-71면 참조.

18) 山下友信, “保險金詐欺請求の法的効果”, 岩原紳作·山下友信·神田秀樹編 『會社·金融·法』 下卷, 商事法務(2013), 712頁.

는 것이었고, 그것은 보험자에 의하여 남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급부면책을 규정하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전혀 없었다. 다만 보험법의 제정을 계기로 급부면책의 효과는 적어도 약관의 문구에서는 삭제되었다. 손해보험회사의 각종 보험약관에 설치한 보험금청구를 위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제출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류 또는 증거를 변조 혹은 위조한 경우 그 법적 효과로서 보험자의 급부면책이라는 효과를 정한 약관조항은 폐기되고 보험자는 부실신고에 의하여 입은 손해의 액수를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효과만 규정하였다. 또한 부실신고면책조항과 관련하여 보험사고 발생시의 통지의무 및 서류제출의무를 포함한 설명의무를 추가하였다.

## (2) 중요한 사유에 의한 해제권

### 1) 이론적 의미

보험법상 중요한 사유에 의한 해제 규정에서 부실신고 면책조항은 편면적 강행규정에 위배되므로 이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유의 해제 개념은 독일의 보험자의 중요한 사유에 의한 특별해약권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일본 보험법에 도입한 것이다.<sup>19)</sup> 독일에서는 보험자의 중요한 사유에 의한 특별해약권은 계속적 채권관계의 특별해약권이라는 일반 법리에 기하여 인정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특별해약권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관계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며,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사기적 보험금청구를 함으로써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 보험자는 해지권을 행사하여 장래에 향하여 보험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게 된다.<sup>20)</sup>

### 2) 해제의 효력

보험법에서는 중요한 사유에 의한 해제권을 신설하였는데, 입안의 기초가 된

19) 中村敏夫, “生命保險·疾病保險における保險者の特別解約權”, 『生命保險契約法の理論と實務』, 保險毎日新聞社(1997), 369頁.

20) 山下友信, 前掲論文, 749頁.

것은 생명보험사의 약관이었다. 중요한 사유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제는 장래를 향하여만 효력을 발생하며, 해제된 경우의 급부면책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였다. 즉 급부면책에 대하여 소급하는 것은 중요한 사유가 발생한 때까지를 의미하고, 이에 따라 종래 약관에서 주장되었던 계약성립시까지 소급한다는 해석의 여지는 남지 않았다. 따라서 중요한 사유에 의한 해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보험계약에서 당사자간의 신뢰관계가 계약의 대전제로서 요구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가 당사자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보험자에게 해제에 따른 보험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sup>21)</sup> 이러한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중요한 사유에 의한 해제는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신뢰관계를 훼손한 경우 상대방을 계약에서 해방시키는 법리라고 볼 수 있는데, 해제에 따른 급부면책의 효력발생시기를 중요한 사유의 발생시까지 소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법 제정 전 약관의 중요한 사유의 해제와 마찬가지로 독일법과 동일한 취지에서 특별해약권의 법리에서 포섭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는 중요한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자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요한 사유에 의한 해제를 위험증가의 법리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보험법에서 중요한 사유에 의한 해제와 위험증가로 인하여 해제의 효력을 동시에 규율하는 것은 급부면책에 대한 인과관계 부존재특칙의 적용 유무를 차치하더라도 중요한 사유의 해제와 위험증가로 인한 해제가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3) 유효성 여부

보험법에서 부실신고 면책조항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사유에 의한 해제 규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요한 사유에 의한 해제 규정에서 부실신고 면책조항은 편면적 강행규정의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하는 견해는 없지만,<sup>22)</sup> 적어도 사기적인 보험금청구를 포함한 부실신고 면책조항의 적용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에 대하여는 비판적인 견해가 많다.<sup>23)</sup> 따라서 부실신고 면책조항과 중요한 사유

21) 萩本修編著, 「一問一答保險法」, 商事法務, 2009, 97-98頁.

22) 村田敏一, “新保險法の總論的課題について—契約類型間の規律の相違点と、規律の性格の問題を中心に”, 「保險學雜誌」第608号(2010), 20-21頁.

에 의한 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 규정의 관계를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요한 사유의 해제 규정에 의하여 중요한 사유의 발생시점까지 소급하는 급부면책을 규정한 것을 고려하면,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면 도덕적 위험이 증가하므로 그 시점 이후의 위험을 보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 이후에는 보험자의 급부면책을 인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즉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해당 시점 이전에 위험의 증가에 따른 면책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생긴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는 중요한 사유의 해제에 따른 급부면책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둘째, 전술한 것은 중요한 사유로서 사기청구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사기적인 보험금청구를 한다는 사실은 보험계약의 관계자에게 보험금을 부정청구하려는 도덕적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고, 위험의 증가가 구체화된 사기적 보험금청구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하여는 급부면책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사기청구를 한 때보다 그 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급부면책이 인정된다. 즉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이 사기청구보다 그 이전에 발생하였다면, 해당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 중요한 사유의 해제에 따른 급부면책이 인정되지 않고, 만일 급부면책을 인정하는 약정이 있다면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에 위반된다. 하지만 해당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 부실신고 면책조항을 적용하는 것까지 편면적 강행규정의 위반이 되는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고, 보험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통지와 손해내용의 신고 등에 따른 보험자의 일련의 조사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부실신고가 있을 수 있고, 보험자의 정당한 이익이 훼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는 통지의무 및 설명의무가 부과되고, 부실신고가 있으면 보험자의 급부면책을 인정하는 약정이 있다. 중요한 사유로 해제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중요한 사유의 해제 전에 발생한 보험금청구권도 그 위험이 있는 이상 일반 보험금청구권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기청구라는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된 경우 급부면책이 중요한 사유의 발생시점인 사기청구시점까지 소급할 수 없다면 부실신고 면책조항을 규율하더라도 이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사유에 의한 해제 규정이 사기청구

23) 山下友信, 上掲論文, 749頁.

에 대하여 부실신고 면책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부실신고 면책조항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규제하지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고, 그 자체가 보험계약의 성질에 기초한 규율이라고 한다면 보험계약의 성질에 기초한 중요한 사유에 의한 해제 규정과의 관계에 대하여 어느 쪽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부실신고 면책조항은 중요한 사유에 의한 해제 규정의 편면적 강행규정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sup>24)</sup>

### 3. 사기청구에 의한 급부면책

#### (1) 현실적 한계

부실신고 면책조항은 사기청구에 의한 중요한 사유의 해제에 대한 규정의 편면적 강행규정성에 반하지 않으므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보험법 제정 당시 마련된 ‘보험법대응약관을 구약관과 같이 환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편면적 강행규정에 관한 입법자의 해석에 근거하여 보험법대응약관이 작성된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해석을 변경하고 구약관으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구약관에서 부실신고 면책조항은 부실신고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급부면책이 된다고 하였지만, 이러한 약관의 규율방식에서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위반은 급부면책이라고 한 약관조항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과도한 면책을 규정한 부당한 조항이라고 하였다.<sup>25)</sup> 그러므로 급부면책을 규정한다면, 독일의 약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실기재 등 사기적 보험금청구를 면책사유로 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해당 약관에 명시함으로써 부실신고의 범위를 규율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 역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독일의 경우와 같이 판례의 법리로서 사기청구에 의한 권리소멸이라는 해석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일본의 상황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사기청구에 의한 급부면책을 인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약관의 규정 이전에 이를 해석론으로 구축하면, 향후 약관의 규정이 없어도 이러한 논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sup>26)</sup>

24) 山下友信, 前掲論文, 760-761頁.

25) 最判 昭和 62年 2月 20日, 『民集』 第41卷 第1号, 159頁.

## (2) 사기청구에 의한 실효법리

독일에서 사기청구에 의한 실효의 법리는 보험계약이 강한 신뢰관계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자의 권리는 신의칙 위반으로 실효의 효과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실효의 효과는 채무위반의 효과로서 급부면책과 같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효과와는 달리 신의칙에 의한 권리행사가 금지된다는 효과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급부면책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강력한 효과를 인정하는 이유로는 보험계약이 강한 신뢰관계에 입각하여 마련되었다는 점이고, 비교법적으로 영국 보험법상의 최대 선의의 원칙(*utmost good faith after the formation of contract*) 등이 대표적이다. 일본에서도 사행계약성 및 선의계약성이라는 보험계약의 특별한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독일의 실효법리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데, 독일에서 사행계약성 및 선의계약성을 강조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효의 법리는 다소 이례적인 이론적 기초를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보험금의 청구과정에서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와 보험금부청구권의 유무 및 보험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정보 등은 보험계약자 측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으므로 사기 청구는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을 악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서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악의적인 행위이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사기행위가 악의성에 근거하고, 신의칙에 기한 보험금청구권 행사의 부정이라는 것의 효과로서 급부면책을 인정하는 해석론은 일본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sup>27)</sup> 그러므로 급부면책이라는 강한 제재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신의칙 위반이 인정되는 사기청구에 대하여는 제재적 효과가 지나치지 않도록 이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독일의 판례의 법리로서 상당히 체계화되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손해액의 부실신고 정도, 사실관계에 대한 부실신고의 중요성,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부정취득목적의 유무라는 보험계약자의 사정 등을 종합적이고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신의칙에 근거한 급부면책의 법리가 해석론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요한

26) 竹濱修, “保險法に規定のない義務の違反の効果—保險事故發生後の説明義務違反の効果を中心に”, 『損害保險研究』 第73卷 第2号(2011), 54-55頁.

27) 竹濱修, 上掲論文, 50-51頁.

사유에 의한 해제 규정의 편면적 강행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급부면책의 법리가 신의칙에 의하여 인정받는 일반 법리가 되려면, 그 법리는 보험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편면적 강행규정과의 저촉은 생기지 않는다. 즉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와 편면적 강행규정과의 관계가 없더라도 신의칙에 근거한 급부면책의 법리를 인정하는 것이 편면적 강행규정이 되는 사기청구에 의한 중요한 사유의 해제 규정과 병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있지만, 이는 중요한 사유에 의한 해제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고 한다.<sup>28)</sup>

#### IV. 맺음말 -우리 법에의 시사점-

2014년 개정된 상법 제4편(보험편)에서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한 규정이 제외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관하여는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다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공법적인 측면에서 규율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상 사기적 보험금청구 등에 관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종래 법무부가 19대 국회에 제출한 안건이 모두 폐기되었지만, 해당 개정안에는 의미 있는 규정들이 다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사기청구에 관한 보험계약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첫째, 상법개정안 제657조의2는 보험금청구권자의 사기청구에 대한 실권조항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보험금청구권자가 악의로 손해를 과다하게 부실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사기청구가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되어 성실한 보험금청구자를 기만할 뿐만 아니라, 보험자는 보험금청구시마다 일일이 실제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과다한 보험금의 지급이 빈번하게 되며 실제의 손해를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르는 비용과 노력이 과중하게 되어 결국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선의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로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유지를 어렵게 할 것이다. 따라서 상법개정안은 사기청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기청구를 하는 보험금청구권자의 보험금청구권 자체를 상실시켜서 그 청구에 따른 불이익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금의 청구과정에서 보험사고 발생

28) 山下友信, 前掲論文, 764-766頁.

의 통지와 보험금부청구권 유무 및 보험금액 등을 확정하기 위한 정보는 보험계약자 측에서 제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으므로 사기청구에 의한 행위는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악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서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악의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국 보험법상의 최대 선의의 사형계약성과 선의계약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지는 논의가 있었지만,<sup>29)</sup> 이는 상당히 추상적 개념이므로 보험법의 적용을 정당화하는 논의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sup>30)</sup> 영국 보험법상의 최대 선의의 원칙은 대륙법상의 신의칙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sup>31)</sup> 그러므로 독일의 판례 법리로서 실효의 법리가 상당히 축척되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급부면책이라는 강한 제재적 효과가 생기는 것과 관련하여 신의칙 위반이 인정되는 사기청구에 대하여는 제재적 효과가 지나치지 않도록 이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기청구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사고로 인한 손해를 사기의 목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보험제도에 미치는 폐해는 고의의 사고 못지않게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법원도 사기청구에 의한 실권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sup>32)</sup>

둘째, 상법개정안은 사기의 목적으로 보험금의 지급 여부 또는 그 보험금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보험자의 급부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유형의 범위로는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면이나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제1호),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면에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제2호), 그 밖에 보험금의 지급 여부 또는 그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숨기는 행위(제3호)를 규율하고 있다. 이는 2007년 독일 개정보험계약법 및 2008년 일본 보험법을 참고한 것으로 사기청구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세부적 사항으로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29) 2013년 2월 법무부가 제출한 상법개정안 제638조 제2항에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최대 선의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지만, 2013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진흥기, “영국법상 보험계약 체결 후 최대선외의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무역보험학회(2008), 223면).

30) 山下友信, 上掲論文, 765頁.

31) 한창희, “영국법의 최대선외의무 논의의 동향과 우리 법에의 시사점”, 「금융법연구」 제5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2008), 85-86면.

32)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56603 판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등.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의하여 보험자의 급부면책을 인정함으로써 보험계약당사자간의 강한 신뢰관계를 중심으로 구축된 계약관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특히 사기청구에 대한 대상으로서 중요한 사유의 해제를 명문화함으로써 부실신고 면책조항의 이론상 의의나 해석에 대하여 충분히 규명이 되지 않더라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중요한 사유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제는 장래를 향하여만 효력을 발생하며,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 급부면책의 형태로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부면책에 관하여 소급하는 시기는 중요한 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를 말하고, 급부면책의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자의 급부면책의 효과가 생길 수 있는 취지의 통지가 필요한데, 상법개정안은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통지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이는 채무위반에 따른 급부면책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자의 급부면책의 효과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독일의 판례법리를 참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독일에서는 종래 채무의 위반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보험자의 급부 의무의 범위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급부면책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인과관계의 부존재특칙이 중과실에 의한 급부면책의 경우만 인정되었지만, 2007년 개정보험계약법에서는 중과실의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의 위반의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특칙에 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보험계약자가 중과실에 의한 위반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책임을 일부 감축할 수 있는 일부면책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슬기, “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연세법학』 제27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2016).
- 성수훈, “우리나라 보험사기의 실태와 효과적인 대처방안”, 『보험법연구』 제5권 제2호, 한국 보험법학회(2011).
- 양기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계약법 개정방향”, 『법학연구』 제55권 제3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2014).
- 유주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논의”, 『월간 생명보험』, 생명 보험협회 (2015).
- 이필규·최병규·김은경 역저,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VVG)』, 세창출판사, 2009.
- 장경환, “보험금 사기청구에 대한 보험계약법상의 입법론”, 『경희법학』 제52권 제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2017).
- 진흥기, “영국법상 보험계약 체결 후 최대선의와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무역보험학회(2008).
- 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 제10판, 삼영사, 2016.
- 한기정, “사기에 의한 보험금청구에 관한 연구”, 『BFL』 제56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2012).
- 한창희, “사기적 보험금청구”, 『법조』 제623호(2008).
- \_\_\_\_\_, “영국법의 최대선의의무 논의 동향과 우리 법에의 시사점”, 『금융법연구』 제5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2008).
- Beckmann/Matusche-Beckmann, Versicherungsrechts-Handbuch/Johannsen, 2.Aufl., 2009.
- Bruck/Möller/Brömmelmeyer, VVG, 9.Aufl., 2008.
- Gesetzesentwurf der Bundesregierung, Entwurf eines Gesetzes zur Reform-VVG, 11. Oktober, 2006, Drucksache 16/3945.
- Juris Praxis Kommentar BGB/Weth, 3. Aufl., Bd.2.1, 2006.
- Lange, Das Anerkenntnisverbot vor und nach der VVG-Reform, VersR 2006.
- Langheid/Wandt/Wandt, Münchener Kommentar zum VVG, Bd.1, 2009.

竹濱修, “保險法に規定のない義務の違反の効果—保險事故發生後の説明義務違反の効果を中心に”, 『損害保險研究』第73卷 第2号(2011).

中村敏夫, “生命保險・疾病保險における保險者の特別解約權”, 『生命保險契約法の理論と實務』, 保險毎日新聞社, 1997.

萩本修編著, 『一問一答保險法』, 商事法務, 2009.

松田眞治, “保險金詐欺請求への法的制裁”, 『生命保險論集』第193号(2015).

村田敏一, “新保險法の總論的課題について—契約類型間の規律の相違点と、規律の性格の問題を中心に”, 『保險學雜誌』第608号(2010).

山下友信, “保險金詐欺請求の法的効果”, 岩原紳作・山下友信・神田秀樹編『會社・金融・法』下卷, 商事法務, 2013.

<Abstract>

## Legislative Issues of Fraudulent Insurance Claim - Focused on the regulations in Germany and Japan -

Kim, Sung Hwa

Korean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is establishe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olicy holders by increasing matters of insurance fraud in 2016. However, because this act is to legislate in terms of criminal law, it is not efficient to regulate fraudulent insurance claims of insurance contracts. In fact, these claims caused by moral hazard that have a harmful effect to the insured and other interested persons, as a result by making an excessive demand on fraudulent insurance claims most policy holders would cover the increase of insurance premium. Thu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egulations between Germany and Japan, and to introduce "Fraudulent Insurance Claim" without conflicting with the existing legislation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the systematic relationships between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and "Insurance Contact Act" in Korea. Therefore, in this article it suggests legislative proposals by examining the patterns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at appear between Germany and Japan. First of all, by adopting 'Verwirkung' of fraudulent insurance claims under the Revised Bill of Korean Commercial Act in 2013, it is necessary to apply properly the rules of fraudulent insurance claims that is formed by the vast reference data and precedents in Germany. Also, Revised Bill of Commercial Act regulates to be exempted from execution of insurer if is discovers several important facts of insurance fraud. Therefore, throughout comparative researches in Germany and Japan, it seeks to make a systematic framework that is appropriate for fraudulent insurance claims in Korea.

**Key Words** : Insurance Fraud, Fraudulent Insurance Claim,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Misrepresentation, Verwirkung